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90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진중오 · 서천호 · 김상훈
고동진 · 서지영 · 김승수
김용태 · 송석준 · 김예지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의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8년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 또는”을 “한정한다),”로, “사람에”를 “사람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2항 중 한정한다) 또는”을 “한정한다),”로, “사람에”를 “사람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로,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할 것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9조의2제1항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를 포함할 것. 다만, 제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 ----- ----- ----- ----- ----- <u><단서 삭제></u>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u><단서 신설></u>	1. ----- ----- ----- ----- ----- -----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u><단서 신설></u>	2. ----- ----- ----- ----- ----- -----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단서 신설>

② ~ ⑨ (생략)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작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지른 경우에는 8년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3. -----

----- . 다만, 19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
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
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한정한다), -----

-----사람 또는 미성년자 대

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 설>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정한다), -----
-----사람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의-----
-----.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

<u><신 설></u>	<u>람: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할 것</u> <u>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9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를 포함할 것. 다만, 제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